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87
----------	------

제출년월일 : 2015.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 나. 새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새주소 정정(안 제3조 별표1)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기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2015. 7. 9. ~ 7. 29.) : 별도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를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반환”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국가적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를 “국가적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승인신청을 취소하거나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으로 한다.

별표 1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원길 11”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8길 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및 기능
사당문화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8길 9	다목적 강당, 문화교실,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문화회관</u>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 2. (생략)</p> <p>제5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u>사당문화회관</u>은 <u>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적정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대관범위) <u>사당문화회관</u>의 대관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부속설</p>	<p>제명 <u>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 동작구</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u>각 호</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 ----- <u>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u>(이하-----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대관범위) ----- -----</p>

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국가적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하거나,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별표1]

명칭	위치	주요시설및기능
사당문화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원길 11	(생략)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반환

2. 국가적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별표1]

명칭	위치	주요시설및기능
사당문화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8길 9	(현행과 같음)